

動力資源部告示 (第83-31号)

石油資源의 탐사 및 시추사업 에 소요되는 資金의 融資基準

石油事業法시행령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資源의 탐사 및 시추사업에 소요
되는 資金의 融資基準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 12. 23

動力資源部長官

1. 장·단기유전개발방향

가. 장기목표 : 석유자원의 자주적 안정공급

나. 단기목표

- (1) 해외유전개발을 통한 기술축적
- (2) 국내단독 광구에서의 유망구조 발견
- (3) 자주개발체제 확립

2. 기본요강

가. 石油開發基金은 석유자원의 탐사 및 시추단
계에 대한 용자지원 및 石油開發公社의 석유
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보조로 사용하며,
생산단계에 대한 차입금의 채무보증은 기금의
조성규모를 감안, 1980년대 중반까지 당분간
유보한다.

나. 석유자원의 탐사 및 시추사업에 대한 용자지
원은 石油開發公社와 민간기업의 개발사업비

소요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 석유자원의 탐사 및 시추사업에 대한 용자는
석유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사업의 실패시
元利金を 감면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공시 이
基金의 보전을 위하여 이자 및 특별부담금 (로
열티)을 징수한다.

라. 石油開發基金의 용자는 기금관리기관이 별
도로 정하는 관리운영규정의 제요건을 충족시
킬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마. 기금관리 기관은 韓國石油開發公社로 하며,
기금의 용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석유개발공사내에 石油開發基金 용자심의
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3. 용자기준

가. 용자대상

(1) 대상자

㉠ 국내의 석유자원의 탐사 및 시추사업을
위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허가를 얻은 대
한민국 국민

㉡ 石油開發公社

(2) 대상사업

㉠ 기금대출계약에 정하는 지역 및 기간내에
실시되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시추사업

㉡ 생산석유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물량을 확보·처분할 수 있는 사업

(3) 대상사업비

- ㉔ 지질조사비 및 물리탐사비
- ㉕ 탐사시추비 및 평가시추비

나. 용자조건

(1) 용자대상 지분한도 및 용자비용

구 분	국내대륙개발사업	해외유전개발사업
㉔ 용자대상 지분한도	○전체지분의 50%이내 ○국내지분중 석유개발공사와 민간기업의 지분비율에는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음	○전체지분의 15%에서 51%까지 ○석유개발공사의 지분비율은 용자대상 지분의 25%를 상한으로함
㉕ 용자비용	○민간기업 : 참여지분중 "가" 항의 대상사업비의 80%이내 ○石油開發公社 : 참여지분전액	○민간기업 : 용자대상지분의 범위내에서 기업부담분중 "가" 항의 대상사업비의 80%이내 ○석유개발공사 : 참여지분전액

(2) 용자기간

- ㉔ 18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 ㉕ 거치기간은 정상생산단계에 달할 때까지로 하되 8년을 초과할 수 없음.

(3) 상환방법 : 연2회 균등분할 상환

(4) 이자율

- ㉔ 연리 8%
- ㉕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

(5) 실패시의 원리금 감면

- ㉔ 기금관리 기관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회의 심의 및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면제할 수 있음.

㉕ 감면조건

- 당해용자사업개시후 8년 이내에 石油의 정상생산 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원리금 감면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 당해용자사업 개시후 8년 이내에 석유의 정상생산 단계에 이를 경우에도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원리금 감

면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

(6) 특별계약의 체결

基金관리 기관은 용자시 대상사업이 성공할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특별부담금 (로열티) 징수계약을 체결하여야함.

(7) 담 보

기금관리 기관은 대출시 물적담보의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물적담보를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용자사업의 경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적담보를 설정할 수 있음.

(8) 자금지급

기금관리기관은 차주명의로 관리자금 계정을 설치하고, 사업진도에 따라 용자비용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9) 개발원유의 국내공급

- ㉔ 基金의 용자지원을 받은 개발수입자는 개발원유에 대하여 국내 수요자와의 독자적 협의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함.
- ㉕ 다만, 국제석유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내소요원유의 확보가 심히 곤란할 경우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정명령에 응하여야 함.

다. 용자절차

(1) 신 청

- ㉔ 신청기간 : 매년 6.1~6.30 (단,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㉕ 접수처 : 기금관리 기관

(2) 심사 및 결정

기금관리 기관은 신청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년도 용자대상자 및 용자액을 심사, 결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3)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

(4) 결정통보

라. 심사기준

(1) 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 ㉔ 사업추진 능력(자본, 기술, 해외경험)
- ㉕ 석유개발유관업체(精油会社, 石油開發公社)의 참여여부
- ㉖ 국내기업간의 콘소시엄 방식에 의한 진출

여부

*국내기업간의 콘소시엄 결성시 정유업체의 참여가 있어야 용자대상 적격업체로 인정

(2) 대상 광구에 관한 사항

㉔ 예상 가채 매장량

㉕ 인근 지역의 성공률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㉖ 계약조건

㉗ 생산원유의 국내반입 가능성 (진출대상국의 국내법상 原油수출이 금지된 사업은 제외)

(4) 개발여건에 관한 사항

㉘ 대상국의 정치, 경제적 여건

㉙ 현지의 사회간접자본 및 수송조건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관리 기관에서 별도로 작성, 운영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1984년도 용자분에 대한 용자 신청기간은 고시 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 海外石油産業動向 □

日本石油業界 집약·재편 本格化

日本石油·三菱石油 업무제휴 움직임

日本石油業界는 최근 大協石油와 丸善石油가 석유정제부문을 통합, 새 회사를 설립키로 한 데 이어 日本 최대의 석유회사인 日本石油와 제5위의 三菱石油가 판매부문에서 업무제휴를 추진하고 있어 석유업계의 집약·재편화가 본격화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日本石油와 三菱石油의 업무제휴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점유율이 25%를 넘는 大型그룹이 형성되어 시장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兩社は 현재 업무제휴가 검토단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通産省과 資源에너지庁은 兩社の 업무제휴를 포함한 석유업계의 집약·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兩社の 경우도 공장도 가격의 통일, 판매지역의 조정 등의 판매제휴를 중심으로 탱커의 共同配船이나 저유소, 석유제품의 상호유통 등 석유정제, 수송, 판매에 이르는 폭넓은 업무제휴의 利点이 기대되고 있다.

또 公正去來委員會도 석유업계 재편에 따른 시장점유율의 처리에 대해 신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兩社の 업무제휴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